

고성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8호)

심사 보고서

1998. 8.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8. 18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1998. 8. 19

다. 상정·의결일자 : 1998. 8. 25 상임위원회 상정·의결

2. 개정이유

-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본청 산업과와 축산과를 농촌지도소와 통폐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명칭변경

- 농촌지도소 → 농업기술센터

- 분장사무 조정

- 본청 산업과와 축산과가 농촌지도소로 통합됨으로써 사무분장 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본청 산업과, 축산과를 농촌지도소와 통폐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려는 내용과 과의 명칭변경으로 관련된 다른 조례 변경을 부칙에 명시한 것으로 1차산업의 행정수요를 감안한 기구조직의 일원화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안 제4조 소장의 직급을 4·5급 농업, 지도직 복수로 할 용의와 안 제5조의 조직과 정원 및 부장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
- 답 :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없어 현재로서는 어려우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능
- 문 : 덕선리 소재 농업기술센터와 현 농촌지도소 위치가 이원화 되어 있어 일원화 할 용의는
- 답 : 농업기술센터(덕선리 소재)에는 기술직을 근무토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문 : 읍면상담소 존치방안과 금년 말까지 존치할 용의는
- 답 : 상담소는 자도소 본청에 집무토록 하고, 읍면상담소는 금년 말까지 존치여부는 차후 검토하겠음.

6. 토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8. 8.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